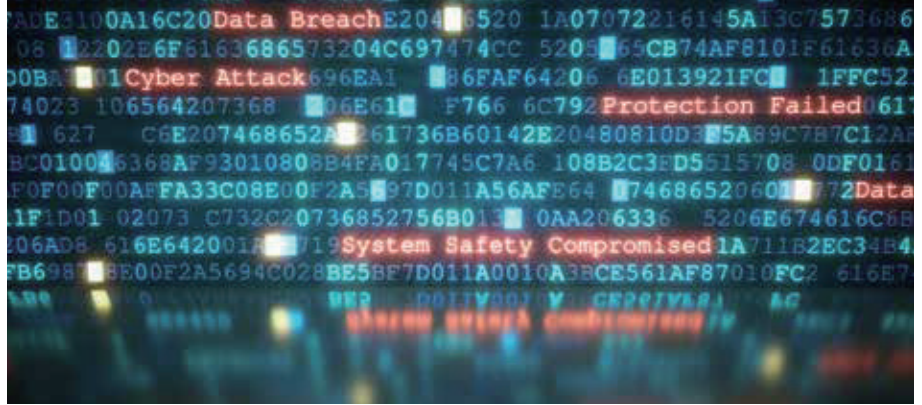


Chubb 사이버위험관리보험



Chubb 사이버위험관리보험은 사이버 활동 중 기업의 과실 혹은 제 3자의 사이버공격 (예: 디도스, 해킹 등)으로 발생하는 기업의 재정적 손실을 보상하여 드리는 보험으로, 기업이 입은 직접적 재정손실을 담보하는 “First-party loss Coverage”와 기업의 제 3자에 대한 배상책임을 담보하는 “Third-party liability Coverage”로 구성됩니다.

주요 인수 업종

- 제조
- 의료서비스
- 교육
- 도매 및 물류
- 운송
- 전문서비스 제공 (법무법인 등)
- 테크놀로지
- 소매
- 공공기관 및 각종협회

주요 보상하는 손해

- 개인정보 혹은 기업정보 유출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배상금, 방어비용 및 *사고대응비용
- 정보통신보안 실패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배상금, 방어비용 및 *사고대응비용
- 인터넷 상에 배포하는 전자적 미디어의 상표권 침해, 저작권 침해, 명예훼손, 비방, 표절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배상금 및 방어비용
- 데이터 유출, 손상, 컴퓨터 시스템 공격 등을 빌미로 금전을 요구하는 사이버협박으로 인해 발생하는 기술, 홍보, 법률, 위기대응 자문 비용 및 협박을 종결시키기 위하여 지급하는 비용

- 악성소프트웨어, 해킹, 프로그래밍 과오 (Error), 인적 과오(Human Error)의 사유로 인해 손실 및 파괴된 데이터의 복구 비용
- 악성소프트웨어, 해킹, 프로그래밍 과오 (Error), 인적 과오(Human Error)의 사유로 인해 피보험자의 컴퓨터시스템 또는 데이터에 접근이 불가능, 중단 혹은 방해되어 발생한 기업휴지 손실 및 복구비용

* 사고대응 비용

- 외부 포렌식 서비스 비용
- 개인정보 관련 규제에 따라 소비자에게 통지 해야 하는 사유 발생 시의 통지비용 (자발적 통지비용 포함)
- 모니터링 서비스 비용 (동의한 개인에 한하여 신용, 신원도용, 소셜미디어 등)
- 피보험회사의 평판을 보호, 복구하는 목적의 홍보, 컨설팅 회사 또는 법무법인 서비스 비용

주요 보상하지 않는 손해

- 범죄, 고의적인 사기 또는 고의적인 부정직 행위
- 신체상의 손상 / 재물손해
- 피보험자 상호 간 손해배상청구 (단, 개인 정보 유출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제외)
- 보험개시일 이전에 알고 있던 사고
- 자연재해
- 전쟁 및 테러 (단, 사이버 테러 행위에 따른 청구 제외)
- 특허 또는 영업비밀
- 지식재산권 (단, 미디어 배상책임보험 제외)

1) 인사 시스템 제공업체 직원에 의한 개인정보유출사고

- 피보험자 - 인사 시스템 제공업체
- 사고경위 - 인사 시스템 제공업체 직원이 서비스를 제공 중이던 고객사의 시스템에 접속하여 고객사 직원의 개인정보를 유출하여 판매함
- 보상내용
 - 1.1 개인정보 배상책임 조항에 따라** 아래의 비용 보상
 - 사고원인 조사를 위한 포렌식 비용
 - 피해 고객사 직원들에게 유출소식 통지비용
 - 고객사 직원들 개인정보에 대한 모니터링 서비스 비용

[1.1 개인정보 배상책임]

당사는 개인정보에 관한 부당행위로 인하여 보험기간 내에 최초로 제기되었고, 본 보험 약관 제5.7조(통지)에 따라 당사에 고지된 개인정보 침해 청구에 따른 손해와 개인정보 침해 청구에 관한 비용을 보상합니다.

2) 사이버협박으로 인한 기업휴지 발생 사고

- 피보험자 - 법무법인
- 사고경위 - 해커집단이 법무법인의 네트워크에 접속하여 법무법인 고객의 민감정보를 해킹 후 법무법인으로 전화하여 해당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조건으로 협박금 지불을 요청
- 보상내용
 - 1.1 개인정보배상책임, 1.4 사이버갈취, 1.6 기업휴지 조항에 따라** 아래의 비용 보상
 - 사고원인 조사를 위한 포렌식 비용
 - 사이버협박 관련 위기대응 자문 비용
 - 협박금 지불,
 - 피해고객에게 유출 내용 통지비용,
 - 복구 비용 그리고 시스템 중단에 따른 기업 휴지비용

[1.1 개인정보 배상책임]

당사는 개인정보에 관한 부당행위로 인하여 보험기간 내에 최초로 제기되었고, 본 보험 약관 제5.7조(통지)에 따라 당사에 고지된 개인정보 침해 청구에 따른 손해와 개인정보 침해 청구에 관한 비용을 보상합니다.

[1.4 사이버갈취]

당사는 사이버 갈취 사유의 발생으로 인하여 보험기간 내에 최초로 제기되었고 본 보험 약관 제5.7조(통지)에 따라 당사에 고지된 사이버 갈취 손해 및 사이버 갈취에 관한 비용을 보상합니다.

[1.6 기업휴지]

당사는 보험기간 내에 최초로 발생되었고, 본 보험약관 제5.7조(통지)에 따라 당사에 고지된 기업휴지 사고로부터 발생한 기업 휴지 손실 및 복구비용을 보상합니다.

* 보상내용은 보험계약조건, 보험금지급관련 조사결과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처브그룹은 세계 보험업계를 선도하는 보험사입니다. 전세계 54개국에서 재물보험, 특종보험, 개인상해보험, 건강보험, 재보험 및 생명보험을 다양한 기업 및 개인 고객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언더라이팅 중심 기업인 처브그룹은 보험에 대한 깊은 이해와 원칙을 바탕으로 리스크를 평가 및 관리하고, 공정하고 신속하게 보험금을 처리, 지급하고 있습니다. 풍부한 보험 전문지식과 장인정신으로 처브그룹은 개인, 가족, 중소기업 및 대기업 등 다양한 고객층에게 최상의 보험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한 처브그룹은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 광범위한 판매 채널, 탁월한 재무 건전성과 글로벌 네트워크를 자랑합니다. 처브그룹은 다국적 기업 및 중소기업 고객을 위한 재물보험, 특종보험, 리스크 관리 서비스, 고액자산보유 고객을 위한 자산보호 목적의 보장성보험, 개인 고객을 위한 생명보험, 상해보험, 건강보험, 주택종합보험 및 특화보험 그리고 단체상해보험, 단체생명보험 및 재보험 상품을 제공합니다.

미화 1,957억 달러 이상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2022년 기준 미화 468억 달러의 총 수입 보험료를 달성한 처브그룹의 주요 보험계열사들은 스탠다드 앤 푸어스사의 기업재무능력 AA 등급을, AM Best의 A++등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처브그룹의 모기업인 처브리미티드(Chubb Limited)는 뉴욕증권거래소(NYSE: CB)에 상장되어 있으며, S&P 500 지수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처브그룹은 취리히, 뉴욕, 런던, 파리 및 기타 주요 도시에 사업본부가 있으며, 전 세계 약 34,000명 이상의 임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라이나손해보험
(에이스아메리칸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처브그룹 컴퍼니
03156 서울시 종로구 삼봉로 48
라이나타워 14, 15층
대표번호: +82 2 2127 2400
대표팩스: +82 2 6913 8498
www.chubb.com/kr

라이나손해보험은 처브그룹 컴퍼니인 에이스아메리칸화재해상보험의 브랜드명으로, 라이나생명과 독립된 계열회사입니다.

금융보험부
Financial Lines
Property & Casualty Division
[E FinLines.KR@chubb.com](mailto:EFinLines.KR@chubb.com)

Chubb. Insured.SM

알아두실 사항

보험가입에 따른 권리와 의무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청약할 때 청약서(질문서를 포함합니다)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계약 후 알릴 의무 및 위반에 따른 불이익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계약을 맺은 후 아래의 사항을 즉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그러지 않을 경우,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예시]

1. 보험목적물을 양도하거나, 다른 장소로 옮기는 경우
2. 기타 위험이 증가하는 경우(예: 건물의 구조를 변경 개축 증축하거나 15일 이상 수선, 30일 이상 비워두거나 휴업하는 경우 등)

회사는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손해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청약시에는 보험계약의 기본사항을 반드시 확인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보험계약 청약 시에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 피보험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보험상품내용(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의 철회

일반금융소비자인 계약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 동법 시행령 제37조, 동법 감독규정 제3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한함)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보장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또는 전문금융 소비자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청약철회 기간 내에 청약철회를 하실 경우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일반금융소비자] 전문금융소비자가 아닌 금융 소비자자를 말합니다

[전문금융소비자] 금융상품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금융상품 계약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금융소비자로서, 구체적인 범위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9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계약의 취소

보험계약자는 청약시 약관과 청약서 부분을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때 또는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 계약취소 신청주소: (03156)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봉로 48 라이나타워 14, 15층
에이스아메리칸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전화: 02-2127-2400)
- 가까운 영업점위치: (03156)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봉로 48 라이나타워 14, 15층

(고객서비스센터) 에이스아메리칸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전화: 02-2127-2400)

보험금 지급사유의 통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사고가 생긴 것을 안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통지를 게을리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그 증가한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보험금의 지급 및 지급제한

보험금의 지급

보험자는 지급보험금이 결정되면 지체 없이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는 보험자가 손해를 통지 받고 보상할 책임을 인정하는 경우 해당 상황에서 지급할 수 있는 최저액을 가지급 보험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상책임이 확정되지 않거나 피보험자의 관리영역 내에 있는 사유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는 기간 동안은 보험금지급을 중지합니다.

- A. 보험자에게 필요한 증빙이 제출되지 않음으로써 피보험자의 보상 청구권에 의문이 있는 경우
- B. 사고와 관련하여 경찰의 조사 또는 형법에 의한 심문이 완결되지 않은 상태로 진행중인 경우

보험금의 지급 제한

약관에서 정한 보상하지 않는 손해 및 일반면책사항(이 일반 면책은 증권의 전 부분에 적용됩니다.), 피보험자 또는 그 대리인의 고의적 행위나 고의적 태만으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한 사항 (해지환급금 안내)

계약의 해지사항

보험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고의로 보험금 지급사유를 발생시킨 경우
2.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3. 계약자,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계약 전 알릴의무를 위반하고 그 의무가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4.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뚜렷한 위험의 증가와 관련된 계약 후 알릴의무를 미이행한 경우

계약의 해제사항

계약자는 계약 체결 후 지체 없이 보험료의 전부 또는 제1회 보험료를 지급하여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계약 성립 후 2개월이 경과하면 그 계약은 해제된 것으로 봅니다(상법 제650조제1항).

보험계약이 효력상실, 해지 또는 소멸된 때에는 아래와 같이 보험료를 돌려드리나 보험기간 중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이 지급된 사실이 있으면 어떠한 경우에도 보험료는 돌려드리지 아니합니다.

-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의 책임없는 사유에 의하는 경우 경과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하여 일단위로 계산한 보험료

-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한 경우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하여 단기요율로 계산한 보험료를 뺀 잔액

해지환급금이 적거나 없는 이유

보험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 시 보험기간 중 납은 미경과 기간에 대해 단기요율을 적용하여 해지환급금을 돌려 드리므로 납입하신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예금자보호 안내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 보호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보험 계약은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보험 상담 및 분쟁의 해결 안내

보험에 관한 상담 및 분쟁이 있을 때에는 먼저 당사 고객센터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라며,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금융감독원에 민원 또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회사 전화번호: 1566-5800(고객서비스센터)
인터넷 주소: www.chubb.com/kr
-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센터
(www.fss.or.kr/ / 국번없이 1332) / 우) 150-743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계약해지 후 다른 보험 계약 시 유의사항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보장내용(면책기간 재적용 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법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

계약자는 보험사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적합성 원칙) 제3항, 제18조(적정성 원칙) 제2항, 제19조(설명 의무) 제1항 및 제3항, 제20조(불공정영업행위 금지) 제1항 또는 제21조(부당권유 행위)를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동법 제47조(위법계약의 해지) 제1항, 동법 시행령 제38조 및 동법 감독규정 제31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체결일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체결에 대한 회사의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서면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계약자는 해지요구서에 위반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험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보험사에 해지를 요구하신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통지(거절할 때에는 거절사유를 함께 포함하여 통지)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법률에 따라 가입의무가 부과되고 그 해제·해지도 해당 법률에 따라 가능한 보장성 상품에 대해 계약의 해지를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동종의 다른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Chubb. Insured.™